

인천지방법원 2022. 1. 11 선고 2021가단25633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인천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배

피 고 1. A

2.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1. 11.

주 문

1. 피고 A은 원고에게 51,482,355원 및 그 중 50,759,945원에 대하여 2021. 8. 26.부터 2021. 10. 6.까지는 연 7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가.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7. 17. 체결된 증여계약을 51,482,35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
나. 피고 B는 원고에게 51,482,3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 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 판결)

판사 남해인

별지